

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경북 5G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‘20~‘23년은  
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해외 수출의 골든 타임 예상
- 나. 5G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심화되어 각 지자체별  
주력산업과 융합된 5G융합산업 육성 경쟁체제 돌입
- 다. 5G 테스트베드의 성과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단계  
에서부터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구미·경북 지역에 특화된 상용화  
가능한 5G 융합제품·서비스·시스템(시범실증분야) 개발 지원
- 라. 이에 원활한 개발 지원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 
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 
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2) 대 표 : 장세용

(3)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
(4) 출연예정액 : 금1,000,000천원(도비 300,000천원, 시비 700,000천원)

나. 주요 사업

(1) 사 업 명 :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

(2) 사업기간 : 2020. 1월 ~ 2022. 12월(3년)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
(4) 총사업비 : 50억원 [도비15, 시비35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사업비 | 연차별 투자계획 |      |      |
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|     | '20년     | '21년 | '22년 |
| 계   | 50  | 10       | 25   | 15   |
| 도 비 | 15  | 3        | 7.5  | 4.5  |
| 시 비 | 35  | 7        | 17.5 | 10.5 |

(5) 추진주체 :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추진방법 : 참여기관 공모

(7) 전담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8) 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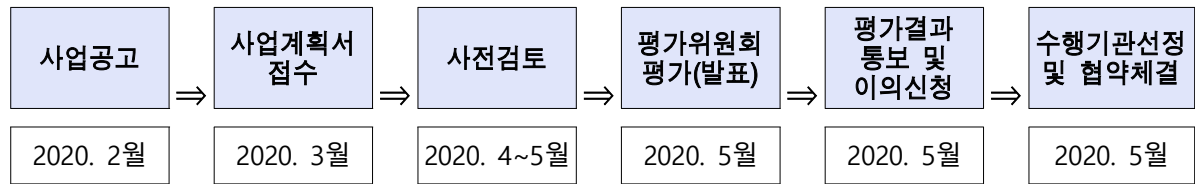
- 4대 중점분야, 11대 전략분야 연구 과제개발 기업지원

| 중점분야                  | 전략사업               | 세부과제    | 금액(억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① 5G기반 제조 산업<br>현장 혁신 | (1) 5G융합 생산공정 혁신   | 자유공모    | 12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개발               | (3억×4개)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) 효율적인 물류·운송 시스템 | 자유공모    | 3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| (3억×1개) |        |
| 소 계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5개 과제   | 15     |

| 중점분야                   | 전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과제            | 금액<br>(억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② 5G기반 문화·관광<br>경쟁력 강화 | (3) 5G 커넥티드 초물입<br>가상관광 서비스        | 자유공모<br>(2억×2개) | 4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(4) 5G커넥티드 관광 큐레이션<br>서비스          | 자유공모<br>(2억×1개) | 2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(5) 미디어 사용자 체감 품질<br>향상 기술         | 자유공모<br>(2억×2개) | 4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개 과제  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(6) 질병 예방·관리 중심의<br>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 | 자유공모<br>(2억×3개) | 6          |
| ③ 5G기반 지역사회<br>문제 해결   | (7) 사회·자연 재난 대응<br>공공안전 서비스 기술개발   | 자유공모<br>(2억×3개) | 6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(8) 신개념 교육용 디바이스 및<br>콘텐츠 기술개발     | 자유공모<br>(1억×3개) | 3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개 과제           | 15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(9) 농작물 재배 관련 정보 수집<br>및 활용 기술     | 자유공모<br>(2억×2개) | 4          |
| ④ 5G기반 농촌<br>생산성 향상    | (10) 농작물 재배 환경 원격 조작<br>및 자동화 기술개발 | 자유공모<br>(2억×2개) | 4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(11) 농작물 전자상거래<br>서비스·플랫폼 기술개발     | 자유공모<br>(2억×1개) | 2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개 과제  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개 과제          | 50         |

### (9) 추진일정 및 계획

- 2019. 8 : 연구개발 분야 및 사업계획 수립
- 2020. 1 : 사업설명회
- 2020. 2 : 사업공고
- 2020. 5 :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·과제개발 추진



\* 1차년도 수행기간은 '20. 5월~'20.12월(8개월)로 하되, 평가 및 심의·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

## 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지역 주력산업에 5G와 ICT 융합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, 다양한 5G 융합산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우위 확보
- (2) 5G의 상용화 이후 5G 융합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하고, 5G 융합을 통해 구미·경북 지역산업의 첨단화·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(3) 5G 융합산업 기업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하고,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생태계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체적인 사업화를 통한 자립화 강화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| 소관 실·과              |       | 신산업정책과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<br>안<br><br>자 | 과 장   | 지영목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  | 채창수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이선영<br>(480-6173) |